

평가 수행 및 인증 서비스에 관한 일반조건

2022년 6월 1일

제1조 적용

- 1.1 본 일반조건(이하 "본 조건")은 테크라코리아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품, 관리시스템 및 공정,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평가 수행 및 인증 서비스에 관하여 테크라코리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조건이 적용된다.
- 1.2 본 조건에서 테크라코리아는 대한민국 내 테크라 그룹의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 1.3 테크라코리아에게 본 조건에서 의도된 평가 및/또는 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한 당사자를 이하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

제2조 견적서의 효력

테크라코리아가 제출한 견적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60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발생

테크라코리아가 제출한 견적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견적서의 유효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당 견적서를 명시적으로 승낙하거나 테크라코리아가 상대방 당사자의 주문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서비스 수행에 관한 계약이 된다.

제4조 주문 지연

- 4.1 합의된 서비스가 지연 또는 연장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이나 연장이 테크라코리아 직원 또는 테크라코리아의 서면 주문서에 의거 해당 서비스 수행에 관여한 사람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테크라코리아는 발생한 추가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4.2 제4.1조의 규정은 제3자에 의한 인증 목적으로 평가가 수행되고 그 제3자가 1회 이상의 추가 평가 및/또는 감사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선택으로 추가 평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테크라코리아는 지연 또는 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요율 및 지급

- 5.1 합의된 요율은 테크라코리아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관련되고 테크라코리아가 납부할 책임이 있는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세금만큼 증액된다. 요율은 예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5.2 테크라코리아는 1년에 1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테크라코리아와 상대방 당사자의 합의로서 1년에 1회를 초과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5.3 평가 결과 확인된 불완전 또는 부적합 사항으로 인하여,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재평가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5.4 지급금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떠한 종류의 공제나 상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서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이견을 제시해야 하나, 그러한 이견 제시로 인해 지급의무가 중지되지 아니한다.

5.5 상대방 당사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연 6%에 상당하는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6 테크라코리아가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하여 채무 회수 또는 기타 권리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로 인해 테크라코리아에 발생한 모든 경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비에는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제3자에게 지급된 모든 지급금, 그리고 합리적으로 위 조치들에 귀속될 수 있는 테크라코리아가 지출한 내부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5.7 테크라코리아는, (추가) 주문서 체결 전에, 항상 테크라코리아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5.8 상대방 당사자가 제7.2조, 제7.3조, 제8조, 제16.2조, 제16.3조 또는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테크라코리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 보증금으로부터 최대 사고 건당 10,000,000원(일천만원)의 위약금을 몰취당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항상 관련 공공기관들을 포함한 제3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적 요건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상대방 당사자의 협조

6.1 상대방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운송비 포함)으로, 합의된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테크라코리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 정보 및 데이터를 테크라코리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견본은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평가 수행 후 파괴된다.

6.3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가 적절한 생산 로케이션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관련자들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6.4 테크라코리아 인증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테크라코리아의 평가에 대하여 제3자의 참관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인증

7.1 테크라코리아는 수행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테크라코리아로부터 유래된 보고서, 증거자료, 인증서 및/또는 서신의 내용은 해당 문서가 작성된 언어로 전부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7.3 테크라코리아가 사전 서면 동의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인증마크, 인증서, 테크라 인증셀 등(총칭하여 "인증마크 등(Usage Objects)")을 사용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3자에게 제13조에서 의도된 테크라코리아의 인증을 받았음을 시사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8.1 각 당사자는 합의된 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수령하거나 달리 취득한 것으로, 그 비밀성이 알려지거나 정보 수령인이 그 비밀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계약(들)의 계약기간

만료, 해지 또는 해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데크라코리아가 적용한 방법·기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로 간주되어야 한다.

8.2 데크라코리아는 데크라코리아가 인증기관으로 승인·지정 받은 관련 조건에 근거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 마찬가지로, 평가 요청이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데크라코리아는 그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8.3 제8.1조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보수령인의 부당행위 없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정보, 또는
-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합법적으로 정보수령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정보, 또는
- 해당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정보수령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또는
- 상대방 당사자가 비밀정보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지정한 정보, 또는
- 정보수령인이 법적 의무로 인하여 적절한 기관에 공표 또는 공개한 정보.

8.4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계약(들)의 계약기간 만료, 해지 또는 해제 후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환하되, 각 당사자는 테스트 및 인증 결과의 증거로 또한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문서의 사본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8.5 데크라코리아의 직원들은 수행된 평가의 비밀유지 및 독립성을 보증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8.6 데크라코리아와 상대방 당사자는 개인정보 또는 기타 민감정보 처리, 전송, 보관 시 한국의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의 정보와 개인정보보호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9조 하도급 계약

제10조를 해함이 없이, 데크라코리아는 데크라코리아의 책임하에 합의된 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제3자에게도 제8.5조의 규정은 적용된다.

제10조 책임

10.1 본 조건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데크라코리아는 데크라코리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합의된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로 인하여 또는 데크라코리아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10.2 제10.1조에 의도된 성격의 여하한 손해, 손실청구 또는 경비에 대한 데크라코리아의 책임은 해당 청구를 초래한 특정 서비스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 금액의 10 배 상당액 또는 50,000,000원(오천만원)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10.3 어떠한 경우에도 데크라코리아는 결과적 손해(합의된 서비스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 상대방 당사자의 정보 손실,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이익 손실, 매출 손실 및 평판·영업권 훼손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4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확인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손해를 데크라코리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데크라코리아 측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소멸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서비스의 이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데크라코리아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하며, 10.4조에 따라 데크라코리아의 책임이 소멸한 이후 상대방 당사자는 데크라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0.5 상대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데크라코리아의 서비스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초래된 손해 배상을 위해 제3자(데크라코리아의 인력 포함)가 제기한 모든 경비와 청구로부터 데크라코리아를 면책해야 한다.

10.6 본 조건에서 의도한 데크라코리아의 책임 제한은 데크라코리아 또는 그 경영진 측의 고의적 부당행위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7 본 조건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의무 및 상대방 당사자의 면책의무에 대한 제한은 데크라코리아의 직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데크라코리아가 합의된 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한 제3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10.8 데크라코리아는 데크라코리아의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사유 (전쟁, 심각한 홍수, 화재, 태풍, 지진 및 전염병 등) 또는 양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기타 사유 (이하 “**불가항력사유**”라고 함) 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데크라코리아의 이행 의무는 중지된다. 데크라코리아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30일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불가능해지는 경우, 각 당사자는 사법 개입 없이 또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어떠한 의무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1.1 상기 조항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데크라코리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또는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크라코리아는 사법적 개입없이, 데크라코리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 없이,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행 및 본 계약의 중지나 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데크라코리아의 권리를 해함이 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크라코리아가 우려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데크라코리아의 의무 이행에 대한 1차 요구 시에도 데크라코리아가 요구한 기한까지 그러한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데크라코리아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해야 할 모든 미수금은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11.2 상대방 당사자의 파산, 지급정지 또는 청산 시, 상대방 당사자가 신탁관리인이나 관리인 또는 기타 형식의 법적 계약 하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률의 운용에 의하여 계약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약불이행에 관한 공식적인 통지 또는 사법적 개입 없이 위에 명시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권리가 데크라코리아에 부여된다.

11.3 정당한 사유로 데크라코리아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고객의 위협/책임 영역으로부터 발생한 이행 불가 시,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임의 해지 시, 데크라코리아는 그 당시까지 제공된 이행에 대해 보수를 즉시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2조 분쟁 및 준거법

12.1 본 조건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중재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중재지는 서울, 대한민국으로 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2.2 본 조건 및 본 조건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은 국제사법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본 조건 및 본 조건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당사자와 테크라코리아가 인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도 적용된다 (이 조건은 제3자에 의한 인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인증계약

상대방 당사자에게 인증마크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테크라코리아가 체결한 모든 계약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양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계약만이 유효하다.

제14조 비배타성 및 서브라이선스 불가

상대방 당사자가 인증마크 등을 받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와 관련하여 부여된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서브라이선스 할 수 없다.

제15조 보수

15.1 제13조에서 의도된 권리에 대하여 합의된 보수는 (또한) 인증마크 등과 테크라코리아가 행한 등록비에도 적용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보수를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

15.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증마크 등의 기본 구조 내에서 테크라코리아가 수행한 검사 및 후속 평가 서비스는 제5조 규정에 따라 당시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청구된다.

제16조 홍보 및 공개

16.1 테크라코리아는 인증마크 등의 교부 또는 철회(있는 경우)를 공개할 수 있다.

16.2 상대방 당사자는 제17.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크라코리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테크라코리아의 인증마크 등과 관련한 경우 외에 다른 목적으로 테크라코리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의 명성과 평판을 해함이 없이 테크라코리아가 제공한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공개는 인증마크 등이 적용되는 사용 분야 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또는 적용되는 기준이나 요건과 관련하여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시스템이나 공정만에 대한 인증의 경우, 제품에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6.3 상대방 당사자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발표나 공개를 하였다고 테크라코리아의 단독 재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테크라코리아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규칙 및 규정의 준수

17.1 상대방 당사자는 관련 법적 규칙과 지침뿐만 아니라 테크라코리아가 정한 요건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와 후속 평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검사 및 후속 평가와 관련하여 테크라코리아가 구매한 견본에 대해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7.2 제품 인증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시장에 출시하는 해당 제품이 테크라코리아가 평가하는 제품 형식(들)과 부합함을 보증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의 재량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견본 또는 설명서를 테크라코리아의 사업장에 비치한다.

출시된 제품이 테크라코리아가 평가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제17.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크라코리아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해당 제품을 판매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하도록 주선하고 남은 재고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금지할 것, 및/또는
- 일반대중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경고할 것, 및/또는
- 해당 행위에 관하여 테크라코리아가 내리는 지시 및 테크라코리아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유통망을 통하여) 이미 판매된 제품을 리콜하거나 리콜을 주선할 것.

17.3 관리 시스템 또는 공정에 대한 인증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증계약의 기간 중에, 관리 시스템 또는 공정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절차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의 처분에 따라 보호받는 품질이나 공정 매뉴얼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제6조가 전부 적용된다.

17.4 상대방 당사자가 테크라코리아가 평가한 제품, 관리 시스템(들) 및/또는 공정(들)에 대하여 관련 요건 및/또는 기준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지체없이 해당 인증마크 등에 열거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변경 계획에 관하여 테크라코리아에 고지해야 한다. 인증계약과 관련된 인증마크 등은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공정들이 테크라코리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그러한 승인을 받은 때부터 변경된 제품, 관리 시스템이나 공정에 적용된다.

17.5 테크라코리아는 다음의 경우 자신의 재량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의무의 이행, 인증마크 등의 제한, 중지, 자격박탈 및/또는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인증마크 등의 제공 조건이 인증 절차에서 불완전하거나 허위 정보의 제공 등으로 인해 (또는 더 이상) 이행되지 않는 경우;
-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관련 규칙 및/또는 기준이 인증 받은 제품, 관리 시스템, 공정 또는 사람이 더 이상 이를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상대방 당사자가 인증마크 등과 관련하여 양도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테크라코리아와의 인증계약에 규정된 수정에 관한 통지의무 또는 작업의무, 특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 테크라코리아와의 감사 또는 인증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인증마크 등이 사용 조건에 반하여 사용되는 경우;
- 필요한 감시감사 또는 테크라코리아가 주선한 그 밖의 감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완전히 완료되지 않는 경우;
- 감시감사 결과 인증마크 등 부여에 관한 사양이 더 이상 제공/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 테스트 기준이 변경되고 재검사 테스트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 당사자가 제8.6조에 따른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본 조건 또는 인증계약을 준수하여 인증마크 등을 철회할 기타 사유.

철회 또는 중지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특히 테크라 인증셀 또는 다른 테스트 서류를 언급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인증마크 등의 사용을 삼가고, 테크라코리아가 요구한 모든 인증마크 등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 또는 기타 청구는 그로 인한 영향없이 존속한다. 인증계약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만료되거나 어느 당사자에 의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17.6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특히 부정경쟁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서만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이 관리 시스템 또는 공정에만 관련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자신의 제품에 테크라코리아의 인증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을 부착할 수 없다. 제품 인증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제품에 가시적이고 판독 가능하며 지울 수 없는 형태로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을 부착해야 한다.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은 그것이 발행·교부된 형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색상 또는 문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에서 발췌한 일부만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은 각 경우에 그 전체로만 사용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도 전자 형식으로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을 수령하는 경우,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크기 축소 시 글자 크기는 최소 Arial 4까지만 허용된다. 크기 변경의 경우,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에 포함된 문구는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문구와 마크의 비율은 변경될 수 없다. 상대방 당사자는 제3자들을 위하여 테크라코리아가 상대방 당사자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인증계약이 적용되는 인증 마크 및/또는 테크라 인증셀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마크 또는 인증셀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7.7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가 인증한 제품, 관리 시스템 및/또는 공정에 관련된 모든 불만사항 및/또는 사고, 그러한 불만사항 및/또는 사고와 관련하여 관할 기관이 취한 조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테크라코리아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 기록에는 각 불만사항 또는 사고를 처리한 방법 및 그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18조 분쟁 및 불만사항

18.1 테크라 인증이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테크라코리아가 처리한다.

18.2 테크라코리아가 인증한 제품, 관리 시스템, 공정 또는 사람에 관한 불만사항이 테크라코리아에 접수되는 경우, 테크라코리아는 해당 불만사항의 정확성을 조사한다. 불만사항과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한 후 조사결과를 이들에게도 보고한다. 테크라코리아가 불만사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가능한 한 불만사항을 충족시키고 추후에 불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한다.

18.3 다른 모든 분쟁에는 제12조가 적용된다.

제19조 면책

19.1 상대방 당사자는 테크라코리아가 인증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시장에 출시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비용으로 테크라코리아를 방어 및 면책하고 이로 인해 테크라코리아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2 테크라코리아는 인증마크 등의 허용불가한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고객 또는 제3자(소비자보호기관 등)가 법적 요건의 위반(테크라 인증셀이 부착된 상태에서 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인증마크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테크라코리아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인증계약의 기간 및 해지

20.1 인증계약의 기간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으로 한다.

20.2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인증서의 현재 유효기간의 만료일자로 인증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증계약이 1건 이상의 인증서에 관련된 경우, 계약은 각 인증서와 관련하여 해당 인증서의 현재 유효기간의 만료일자로 해지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크라코리아로부터 사업상의 이유로 인증계약의 지속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크라코리아는 인증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20.3 해당 인증서(들)에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3개월 전의 통지로 각 인증서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2조의 마지막 문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1조 가분성

위 조항들 중의 하나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들과 계약의 효력은 그로 인한 영향없이 존속한다. 무효인 조항은 그 목적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22조 준거 언어

본 조건의 영문본 및 국문본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데크라코리아(주)

www.dekra.kr